



##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
### 판 결

사 건 2026고정11 저작권법위반  
피 고 인 1. A  
2. 주식회사 B  
검 사 송보형(기소), 서유진(공판)  
판 결 선 고 2026. 3. 3.

### 주 문

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.

### 이 유

#### 1. 공소사실<sup>1)</sup>

##### 가. 피고인 A

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

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. 7. 26.경부터 2024. 11. 1.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'E'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사용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

1)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.



을 침해하였다.

#### 나. 피고인 주식회사 B

피고인은 위 가.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.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.

### 2. 판단

#### 가. 해당법조

1) 피고인 A: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, 제124조 제1항 제3호

2) 피고인 주식회사 B: 저작권법 제141조, 제136조 제2항 제4호, 제124조 제1항 제3

호

나. 친고죄: 각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

다. 고소의 취소: 피해자가 검사의 약식명령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약7058) 청구(2025. 10. 31.) 이후인 2026. 1.경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2026. 1. 27.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

라. 공소기각 판결: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

판사 류봉근 \_\_\_\_\_